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58
----------	-------

발의연월일 : 2018. 8. 30.

발의자 : 김병욱 · 이찬열 · 고용진
김경협 · 강훈식 · 권칠승
윤후덕 · 정재호 · 강병원
김해영 · 안호영 · 김병관
이종걸 · 박찬대 · 오영훈
이상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되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를 “하도급대금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변동에”를 “등의 변동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1. <u>설계변경</u>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6조의2(공급원가 <u>변동에</u>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u>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u>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② ~ ⑧ (생략)</p>	<p>----- ----- ----- -----. 1. <u>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u> -----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공급원가 <u>등의 변동에</u>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u> ----- ----- ----- ----- 1. <u>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 되는 경우</u> 2. <u>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u> ② ~ ⑧ (현행과 같음)</p>
--	---